

# 建築土法中改正法律

◎法律第3,242号

1980년 1월 4일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사법중 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학

국무위원 최종완  
건설부장관

建築土法中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2条 第2号 및 第4号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

2. “建築土補”라 함은 第23条의規定에 의한 建築土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士의 業務를 補助하는 者중 国家者중 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土木·電氣·機械·國國土開發 또는 安全管理分의 技術系技術資格을 取得한 者 및 大統領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 建設部長官에게 申告한 者를 말한다.

4. “工事監理”라 함은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設計図書대로 施工되는가의 与否를 확인하고, 工事施工者를 指導하는 行為를 말한다.

第7条第2項중 “다른法律”을 “法律”로 한다.

第14条本文의 後段에 但書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다만, 建設部長官은 第1号의規定에 의한 学歷이 있는 者에게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따라 第1次試驗에 応試하게 할 수 있다.

第14条 第5号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建築土補(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技士2級 또는 建築分野의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를 제외한다)로서 5年이상 第23条의規定에 의한 建築土事務所에 소속하여 建築에 관한 實務經歴을 가진 者.

第23条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条(登録) ① 建築士가 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単 또는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정하여 建設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경우에 国家技術資格法에 의하여 建築·土木·電氣·機械·國國土開發 또는 安全management分野의 技術系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를 建築土補로 확보하여 建築士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綜合建築事務所로 登錄할 수 있다.

③ 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綜合建築事務所를 登錄한 者는 共同住宅등 大統領이 정하는 建築物(이하 “共同住宅등”이라 한다)의 設計業務를 제외한 建築士業務를 행하며, 綜合建築事務所를 登錄한 者이외의 者는 共同住宅등의 工事監理業務를 제외한 建築士業務를 행한다.

다만, 大統領이 정하는 建築物에 대한 建築士業務는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에 限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④ 第1項 및 第2項의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錄基準 및 登錄節次등에 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의規定에 의하여 建築士事務所의 登錄을申請하는 者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第23条의 2의題目 “(合同事務所)”를 “(検査事務의代行 등)”으로 하고, 同条 第1項 및 第2項을 각각 除하며, 同条 第3項중 “合同事務所”를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 및 綜合建築士事務所”로 하고, 同条 第4項중 “合同事務所를 登錄한 者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業務에 관하여”를 “合同으로 建築士事務所를 登錄한 者는 그 建築士事務所의 業務에 관하여”로 한다.

第27条 第1項중 “補助士”를 “建築土補”로, “閣令”을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28条 第1項 第4号를 削除한다.

第29条 第3項중 “閣令”을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34条 第1項중 “会長1人” 다음에 “副会長1人”을 插入하고, 同条 第3項을 第4項으로 하여 同項중 “会長” 다음에 “副会長”을 插入하고, 同条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 副会長은 常勤으로 한다.

第35条 第1項중 “閣令”을 “大統領令”으로 한다.

第38条 第2項중 “前項”을 “第1項”으로 한다. 並

第41条중 “第11条 第2項”을 “第11条 第3項”으로 한다. 法律 第3,074号 建築土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同前) 종전의規定에 의한 2級建築士(이하 “2級建築士”라 한다)는 第4条의規定에 불구하고 3層이하인 建築物로서 延面積 1,500平方미터 이하인 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할 수 있다.

##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198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 (2級建築士에 관한 特例) 2級建築士는 第16条의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例銓衡試験으로 이 法에 의한 建築士의 免許를 받을 수 있다.

③ (建築土補에 관한 経過措置) 종전의規定에 의하여 建築辅助土로 申告한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建築土補로 본다.